



- 1. 정의:** "구매자" 및 "판매자"는 구매 주문서에서 확인된 주체이다.
- 2. 계약의 수락:** 본 구매주문 약관, 구매주문서, 상품공급계약 및 그러한 문서들에 첨부된 별첨 또는 별표는 양 당사자간의 포괄적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협상 내용 및 의사 표시를 대체한다.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품, 재료, 설비, 공급품, 용역, 또는 작업(이하 "상품"이라 함)에 대한 구매자의 구매주문을 판매자가 수락하거나 제공에 착수하는 것은 판매자가 본 계약에 대해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상 판매자의 수락은 본 약관에 한한다. 구매자, 또는 구매자를 지배하거나 그 지배를 받거나, 함께 지배를 받는 구매자의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함)도 본 계약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3. 납품:** 납품은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시기 및 수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자는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납기를 맞추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모든 납품된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에 대한 검사는 구매자가 한다.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모든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의 엄수이다. 언제라도, 판매자가 볼 때 납품이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사유 및 예상되는 지연일수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4. 선적:** 구매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으면, 판매자는 목적지에서 수령할 때 모든 물품 FCA 출발항 (Incoterms ® 2010) 소유권 이전을 발송한다. 판매자는 (<https://gsn.gates.com>)에 있는 공급자 요구 사항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여 모든 제품을 포장, 표시 및 배송해야 한다. 판매자는 제조국가의 모든 수출관련 규정과 수입 국가 관세 당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포장명세서와 송장 (인보이스), 그리고 선하증권에는 구매 주문 번호와 운송인의 포장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선적이 완료되면 모든 선하증권의 원본 또는 영수증 원본은 즉시 구매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모든 대금 상환 인도 (C.O.D.) 조건 선적, 일람불 약속 어음(sight draft) 조건으로 발송된 상품,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품 등은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날짜 및 필요 날짜 별로 배를 준수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 주문서에 언급된 날짜별로 명시된 선박을 제조, 포장 및 선적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시한 운송 업체를 사용한다. 판매자는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일정 및 배포 절차에 따라 제품을 인도한다. 판매자가



늦게 배송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구매 주문서의 지연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선적 비용을 지불한다.

5. 대금지급, 송장 및 제세금: 본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다면, (a)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유효한 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b)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유효한 송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송장에서 1.5%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송장의 날짜는 선적일보다 앞선 날짜로 할 수 없다. 판매자는 모든 송장에 주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판매자의 판매가격에는 사용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근로소득세,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국세, 주세, 지방세 등이 포함된다. 모든 세금은 송장에 개별적으로 명시하며, 송장에는 과세금액 및 비과세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며, 과세금액은 송장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송장에 명시하여, 구매자가 해당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정부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그러한 원천 징수세를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판매자 명의로 된 유효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판매자가 과세협정 또는 기타 규약의 결과로 인해 원천징수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납부기한 최소 30일 전에 구매자에게 과세협정에 따른 거주지 증명서 또는 기타 면세증명서를 제공한다. 기타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에 대한 방해 없이, 구매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매자에 대한 채권액으로써 상계 또는 공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6. 보증: 판매자는 해당 상품이, 해당 기준, 명세사항 및 도면 등에 부합하고, 그 상품이 사용될 특정 용도에 적합하며, 재질이나 제작공정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도 없으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속한 기타 명시적 보증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판매자가 상품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판매자는 그 상품이 구매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최종 제품에의 설치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판매자가 만든 설계도에 대한 구매자의 서면승인이 있다해도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보증의무를 경감시키지 않으며, 판매자가 잘 알지 못했던 점이 있다해도 방어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판매자는



본 상품보증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상품보증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관례적인 보증 및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보증사항에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7. 품질관리: 판매자는 IATF 16949, ISO9001의 모든 조건, 구매자의 공급자 요건 매뉴얼의 모든 규정, 공급자 행동강령, 상품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구매자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타 명세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상품에 대한 검사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유지할 것에 동의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든 검사작업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구매주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상품("부적합 상품")과 보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 하자가 있는 상품("하자있는 상품")은 판매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환불을 위해 판매자에게 반품한다. 판매자의 부적합 문제로 인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된다. 구매주문서에 표시된 상품에 대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매자가 그 상품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또한 하자나 부적합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면책 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지적재산권: 구매자는 모든 특허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독점적 정보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마스크워크(mask work) 그리고 기타 지적재산권 등 구매자의 주문서에 따라 판매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 발견, 발명, 원저작물, 전략, 계획, 데이터 등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의 "고용저작물"(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규정된 "고용저작물")로 간주되거나 그 저작물이 창작된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1차적 소유자"의 지위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판매자는 저작물이 창작되면 즉시 그러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구매자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법의 적용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저작물의 창작 즉시 자동적으로 구매자가 전부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체의 권리, 명의 및 이익을 구매자에게 이전 및 양도하기로 한다.

9. 비밀정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여하한 형태의 모든 정보는 구매자에게 비비밀이고 독점적인 정보("비밀정보")로 간주된다는 점을 판매자는 양해한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비밀정보는 구매자의 자산이 되며 구매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또는 파기에 대한 서면확인을 받아 파기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정보가 (a) 판매자가 허락하지 않은 공개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개된 경우, (b) 공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공개로부터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수령한 경우, 또는 (c) 법률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그러한 정보의 비밀을 무한적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비밀정보의 사용은,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받는 것이 필요했던 판매자의 피고용 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판매자는 비밀정보를 토대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판매자는 자신의 피고용인이 비밀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취소: 구매자는 판매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구매주문서에 따른 적기의 납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 없이 또는 추가적 채무 부담없이 구매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신의 편의로써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신의 편의로써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판매자가 확인한 다음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한다. (a) 구매주문에 따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품된 대금의 미지급금, (b) 구매자 자산에 대한 채권, (c) 구매자의 납품일정에 맞춰 출고된 상품으로 검수를 통과했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완제품, (d) 구매자의 납품일정 또는 출고일정에 따라 주문된 재공품(work-in-progress) 및 원재료에 발생한 실비용으로서, 판매자가 자신이나 다른 고객에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일 때. 본 조항에 따른 결제는 구매자가 다음의 것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i) 주문취소 이후 30일 이내에 확인된 판매자의 서류, (ii) 완성품 및 미완 성품, (iii) 구매자의 자산 및 (iv) 재공품 및 원재료. 본 계약의 취소가 취소 이전에 발생한 판매자의 채무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1. 구매자의 자산: 장비, 도구, 불박이 구조물, 금형(dies), 지그(jigs), 견본(patterns), 측량계, 자재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였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였거나 대금을 지불한 모든 자산(이하 집합하여 “구매자의 자산”이라 함)은 구매자의 독점 재산이며 판매자는 단지 보관자로서 보관하는 것이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소유물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판매자의 보관 및 관리 하에 있는 동안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자산의 분실, 도난, 손상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자산에 유치권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며 분실이나 파손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모든 자산에 “구매자의 자산”이라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판매자는 (a) 구매자의 자산을 본 계약의 이 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b) 구매자의 자산을 사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c) 구매자의 자산을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구매주문서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며, (d)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구매자의 자산을 매각, 양도 또는 기타 처분하지 아니한다. 구매자는 합리적인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판매자의 시설로 들어가서 구매자의 자산 및 이와 관련된 판매자의 관리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2. 생산설비: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 금형(dies), 도구, 측량계, 지그(jig), 불박이 구조물, 견본(“생산설비”) 등을 양호한 상태로 설치 및 보존해야 한다. 구매자는 자신이 주문한 상품의 생산에 맞춰 특수하게 설치된 생산설비에 의한 상품이 판매자의 표준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유사 상품의 상당한 양이 판매자에 의해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권과 명의를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13. 명세서의 변경: 구매자는 상품의 디자인 및 명세서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한 단가 및 작업시간의 차이는 공정하게 조정하고 그에 따라 구매주문도 변경된다.

14. 손해배상: 판매자는, (a) 판매자, 판매자의 종업원, 대리인, 하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 (b) 본 계약상 판매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c) 하자있는 상품, (d) 상품에 대한 안전 경고수칙의 미비 또는 적절한 사용수칙의 미제공, (e) 면책받는 당사자에 의한 본 상품의 사용, (f) 상품의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수입을 이유로 하는 타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실제적 침해 또는 침해의 주장 또는 침해의 유인 등으로 인해, 구매자와 그 계열회사 그리고 그 임원, 이사, 종업원, 고객(이하 집합하여 “면책받는 당사자”라 함) 등의 "면책받는 당사자"에 대해서 주장될 수 있거나, 그러한 면책받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요구, 청구(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배상청구 포함), 손해, 소송행위, 판결, 벌금, 벌칙, 손실,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수수료(수출입 통관 비)에 대해 면책받는 당사자에게 배상하고, 면책받는 당사자를 위하여 방어를 하고, 면책받는 당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본 조항의 면책의무는 면책받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신체손상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이들을 면책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보험: 판매자는 다음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a)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으로서 양 보험의 보험금액 합계액이 1년간 최소 보험금액이 5백만



달러이며, 1년 1회의 보험사고당 최소 2백만 달러일 것, (b) 법정금액에 맞춘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배상책임보험.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보험증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매자나 그 면책당사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음의 보험증서 및 증명서를 제출한다 - (x) 보험계약이,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둔 사전 서면통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y)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에 구매자를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내용, (z) 보험사가 구매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

16. 구제수단: 판매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간접비용의 지출, 벌금, 행정비용 및 기타 부담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지불하거나 보상한다 - (a) 부적합 상품 또는 하자있는 상품, (b) 구매자가 다른 고객에게 판매 하는 판매자의 하자있는 상품 또는 부적합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 및 그러한 상품의 수리 및 교체, (c) 납품일정 또는 요건을 판매자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d) 판매자에 의한 본 계약 규정의 불이행.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자는 자신이 자신의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에게 보유하고 있는 보증의 권리나 배상의 권리를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본 계약에 명시된 구제수단은 법률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여되는 구제수단의 존재에 불구하고 추가된다.

17. 현장 용역: 구매자의 시설에서 작업을 할 때 판매자의 근로자들은 구매자의 회사규정, 정책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자는 자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밀보호, 보안, 관리상의 사유로 구매자가 요구하는 모든 양식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사전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용역이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발생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18. 법의 준수: 판매자는 자신이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상품도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장하고 진술한다. “관련법률”에는 노무 및 고용법(임금 및 아동노동법을 포함), 근로자안전법, 데이터 사생활보호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보호법, 기업경영법, 인허가법, 토지구획법, 수출입법, 해운법, 차별금지법, 미국의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 및 영국의 2010년 뇌물방지법을 포함하는 부패방지법 등이 포함된다. 판매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과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러한 법규들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상품이 미국으로 배송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미국 행정명령 제11246호 202조가 참조문헌으로 포함된다.

19. 환경 준수 : 제 17 조에 따른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판매자는 (i) 상품의 제조 또는 공급, (ii) 상품의 운송 및 배포 및 (iii) 의도된 사용을 위한 상품의 구성 또는 내용에 있어 모든 국가, 지역, 주 및 지방의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면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판매자는 특정 화학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운송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러한 모든 물품들이 EU 등록 평가, 허가 및 화학 물질 규제 규정 ("REACH") 또는 요구되는 경우 유사한 규정들에 따라 적절하게 상표가 붙고 사전 등록 및/또는 허가받는 세계 어느 국가 또는 관할권의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0. 분쟁지역 광물 : 제 17 조에 따른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판매자는 제조 또는 공급하는 물품의 분쟁지역 광물로 식별되는 탄탈, 주석, 텅스텐, 금 및 기타 광물이 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주변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인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가지고 실사를 실시한다.

21. 공급망 보안: 상품이 국가간의 국경선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 판매자는 수입하는 국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즉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해운법, 미국 관세 및 국경선 보호의 테러방지를 위한 C-TPAT, 캐나다로 가는 선적의 경우, 파트너보호법(PIP)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물류 표를 제공하거나보고에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22. 구매자의 책임: 어떠한 경우든 본 계약에 대한 위반이나 위반의 주장 또는 계약의 취소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은 해당 구매주문서에 표시된 총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그러한 계약의 위반, 위반의 주장 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징벌적, 특수적, 간접적,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3. 구매자 책임 : 어떤 경우에도 본 계약의 위반, 주장된 위반 또는 취소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은 해당 구매 주문서에 표시된 총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구매자는 그러한 위반, 주장된 위반 또는 취소로 인한 징벌적, 특수적, 간접적,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4. 광고: 판매자는 먼저 구매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계약의 내용이나 존재 또는 양 당사자간의 관계 또는 구매자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사항을 광고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다.

25.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기후, 민중 소요, 민정당국 또는 군사당국의 행위 또는 천재 지변 등 각자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 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책은 해당 당사자가 그러한 사유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에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지체를 유발시킨 사유가 지속되는 시간 및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불가항력으로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지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판매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기타 제약요소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생산시설의 가동중단, 교통문제 등)에는 판매자는 상품의 공급가능한 총수량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다른 고객에게 배분할 것을 약속한다.

26. 양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없이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과금, 하도급 발주하거나 기타 거래를 할 수 있다.

27. 독립적 계약당사자 관계: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행위하는 것이며,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상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명의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이를 창설할 권리나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28. 효력 유지: 각 조항의 내용 중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외에도 5, 6, 7, 8, 9, 10, 13, 15, 19, 24, 25, 26 및 27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구매주문이 취소되거나 본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9.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구매주문서의 일부 조항이 중재인 또는 관할법원에 의해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은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변경 및 해석되고,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전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30.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만 변경 또는 해지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은



판매자의 인정 문구, 송장, 제안서, 인용 문구, 타임카드 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작성된 기타 문서의 내용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조항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포기도 계속적인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1. 관할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에 대해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구매자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관할지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분쟁사안에 대하여 배심 재판 또는 소송원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구매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해결방식과 절차를 결정한다.

32. 감사권: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자신의 판단과 비용부담으로 판매자의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테스트, 관련기록, 판매자의 재고, 납품, 품질 및 제조과정, 본 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계약이행능력, 판매자의 관련법률의 준 수여부 및 본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감사,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33. 원산지 요구 사항: 판매자가 모든 제품들의 원산지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과 모든 적격 제품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자유 무역 협정 ("FTA")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이 구매 주문서의 조건이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원산지 변경 또는 FTA 자격 변경을 30 일 이내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